룩셈부르크 - 이자비용 처리의 세법상 한도 가이드라인 발표

■ 룩셈부르크 세무 당국은 2021년 1월 8일 이자비용 처리의 세법상 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함[1)]

○ 가이드라인에서는 300만유로[2)]와 EBITDA(Earnings Before Interest, Taxes, Depreciation, and Amortization)의 30%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이자비용만 세법상 비용으로서 이익에 대해 차감할 수 있음을 밝힘

- 납세자의 차입비용에는 모든 형태의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과 이자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기타 비용,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경제적으로 발생한 비용이 포함됨

○ 해당 가이드라인은 EU의 2016 - 조세 회피 방지 명령(EU's 2016 anti-tax-avoidance directive)을 준수함

■ 적용되는 이자비용은 금융상품과 파생상품 등에 관련된 이자비용 또한 포함됨

○ 세법상 한도가 적용되는 이자비용에는 다음의 항목들을 포함함

- 금융상품의 발행 및 상환 프리미엄
- 선물, 옵션 및 스왑 계약을 포함한 파생상품의 차입 비용
- 관련 자산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자본화된 이자 또는 자본화된 이자의 상각

■ 차감에 사용되지 않은 이자비용은 이월규정에 따라 이월됨

○ 이월 이자비용의 차기 공제는 EBITDA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

○ 300만유로 이상의 차입비용이 발생한 납세자만이 해당 이자비용을 이월

1) IBFD. Luxembourg Clarifies Application of Interest Limitation Rule Under ATAD. https://research.ibfd.org/#/doc?url=/data/tns/docs/html/tns_2021-01-14_lu_1.html. 검색일자 : 2021. 2. 3.
2) 2021년 2월 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0억 4천만원임.

할 수 있음

○ 5년의 기간 동안 이월할 수 있고, 시간 순으로 먼저 발생한 이자비용에 대해 공제함

<자료 수집 및 정리: 권순오 세무사>